



환경부



수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/살생물물질 제조자 및 수입자
(경유)

제목 2022년 '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' 및 '살생물제' 실적보고 자료입력 안내(1차)

1. 「화학제품안전법」 제49조(기록 및 보고) 및 화학제품관리과-228('22.2.16) 호와 관련입니다.
2. 평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귀사에 감사드립니다.
3. 관련 법령 및 사전안내한 바와 같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(이하 '안생품')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자료를 매 2년마다 환경부장관에게 보고(이하 '자료제출')해야 합니다.
4. 이에, '22년도 자료제출 계획에 따라 '화학제품관리시스템'으로 실적자료를 제출 받고자 하오니 기한 내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불임의 실적입력 방법을 참조하여 자료제출 기한까지 실적입력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'22년도 자료제출 기한 : ~ '22.3.31.

※ 인터넷 화학제품관리시스템(<https://chemp.me.go.kr>)으로 자료 입력 간소화

○ '22년도 자료제출 계획

< 대상자 >

- ▶ 2020 ~ 2021년 기간동안 살생물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
- ▶ 2020 ~ 2021년 기간동안 안생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
- ※ '20.'~'21. 중에 살생물물질과 안생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실적이 있는 자는 모두 대상에 포함되며, 폐업·영업중단 등으로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'실적없음'으로 제출

< 대상자료 >

- ▶ (살생물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) '20~'21년 기간동안 제조 또는 수입한 살생물물질의 명칭과 연도별 총량(제조·수입한 물질의 전체 무게 또는 부피를 합산한 값)
 - 실적입력 준비 : 살생물물질별로 살생물제품유형을 구분하여 연간 제조·수입한 실적을 준비(물질구분은 사업자별 승인유예 기존살생물물질 신고자료 참조)
- ▶ (안생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) '20~'21년 기간동안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의 명칭과 연도별 총수량 및 총량(제조·수입한 제품 내용물*의 전체 무게 또는 부피를 합산한 값)

* 내용물은 신고증명서 또는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중량·용량 등을 의미,
(예시) 살균제 용량 500mL를 10개 제조한 경우 총량은 5L(0.5L×10개)임

- 실적입력 준비 : 신고나 승인받은 제품별 연간 제조·수입한 실적을 정리하여 입력준비(신고증명서 또는 승인통지서에서 대상제품 확인)

- * 신고제품의 실적자료는 대표제품과 파생제품을 각각 준비, 각 제품별 여러개의 중량·용량이 있는 경우 각각을 합산한 최종값을 입력할 수 있도록 준비 (중량·용량이 아닌 단위를 사용하는 제품은 총수량(개) 자료만 준비)

※ (자료제출 면제) 다른 법령에 따라 안생품 및 살생물질 자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제출한 경우

- * (다른법령 예시)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10조에 따른 '화학물질통계조사',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에 따른 '중점관리물질 신고'

< 자료제출 방법 ('22.3.2.부터 제출가능)>

▶ (공통사항) 사업자별로 화학제품관리시스템(인터넷 chemp.me.go.kr)에 로그인하여 제공되는 목록에 대해서만 실적입력, 자료제출 면제에 해당하는 경우 보고면제* 선택 후 실적보고 완료

- *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자료를 이미 보고했거나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명칭(예시 중점관리물질 신고)을 입력, 향후 해당자료 관리기관을 통해 검증예정

▶ (살생물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) 신고된 기존살생물물질별 및 살생물제품 유형별 총량

▶ (안생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) 제품별 총수량(개), 총량

- * 중량·용량이 아닌 단위를 사용하는 제품은 총수량(개)만 입력

< 자료제출 관련 일정 >

- ▶ '20~'21년 연도별 제품 또는 물질 실적 입력자료 준비(사업자) : ~'22.2.28.
- ▶ 구체적인 자료제출 방법 안내(환경부→사업자) : '22.2.28.
- ▶ 화학제품관리시스템으로 자료 입력(사업자) : '22.3.2.~ 3.31.
- ▶ 자료 검증, 미제출자 확인·조치 등(환경부·환경청) : ~ '22.4.29.

○ 자료제출 관련 문의

: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문의 연락처 공지('22.3.2.)

- 붙임 1. 실적보고자료 입력방법 1부.
2. 실적보고 관련 질의/응답(Q&A) 1부. 끝.

